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규정

제정 2011.01.01 1차 개정 2012.02.10
2차 개정 2012.03.01 3차 개정 2016.07.01
4차 개정 2022.10.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 학칙 제40조의2(장애학생의 지원)규정에 의거, 우송정보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기본적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업무와 관련제도를 마련하는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수· 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생활·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의 시설·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의 상담· 진로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지원 개선· 발전방안에 관한 주요 사항
6. 장애학생 차별관련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7. 장애학생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혁신본부장이 된다. <개정 2022.10.4.>

②위원은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관장하며,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